

---

# 「글로벌기술도입지원사업(X&D-track)」 참여기업 모집공고

---

2024. 3.



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
Korea Core Industrial Technology Investment Association

# 2024년 글로벌기술도입지원사업(X&D-track) 참여기업 모집공고

산업통상자원부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(제2024-175호) 의거 2024년도 글로벌기술도입지원사업(X&D-track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3월 6일

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

1

##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** : 글로벌 우수기술 도입을 통해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 시장진출 확대 등 글로벌 개방형 혁신\* 촉진

\* 글로벌 개방형 혁신 : 국경을 초월한 해외 우수기술 보유기업 ①M&A ②지분투자 ③합작법인 설립 ④특허권 인수 등 견고한 경제적 공동체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기술경쟁력 제고

- **지원대상** :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·중견기업

## □ 지원내용

- (글로벌기업 발굴·매칭) 우수기술을 보유한 글로벌기업을 발굴하여 비즈니스 미팅 지원
- (기술도입계약 성사지원) 협상단계 기업에 전문가 비용지원(Max. 24백만원)  
\* 예산소진시까지 선착순 지원
- (사업화 R&D 연계지원) 기술도입 계약성사기업 R&D 과제 참여자격 부여(3년간 30억원)

지원구분	지원 세부사항
글로벌기업 발굴·매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KITIA가 발굴하여 협력의사를 확인한 후에 온·오프라인 방식의 매칭지원</li> <li>• 기술별 특허, 품목별 제품 등 기반 해외기업 정보제공 * 기업개요, 재무현황, 지배구조, 보유특허 현황, M&amp;A·투자현황 등 세부정보 제공</li> <li>• 해외기업 M&amp;A 매물정보(Teaser 정보) 제공 * KITIA 글로벌 M&amp;A 자문기관 네트워크에서 발굴된 정보. 신청기업별 매칭수요가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개별제공</li> </ul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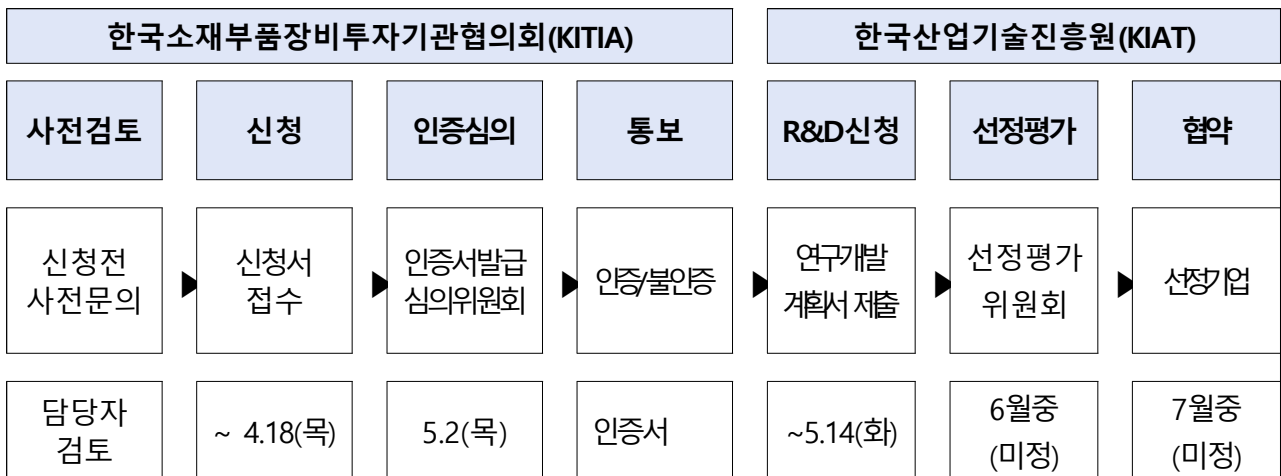
기술도입 계약 성사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술가치평가, 법률 실사, 회계 실사, M&amp;A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전문가 활용 비용지원 최대 2,400만원 지원* * 중소기업 총 사업비의 80%, 중견기업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</li> <li>총 사업비(100%, 공급가액 기준)의 구성 : 정부지원금 80% 이하 + 민간부담금 20% 이상 <b>&lt; 총 사업비 구성 (예시, 중소기업) &gt;</b></li> </ul>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33%;">총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정부지원금</th> <th style="width: 33%;">민간부담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3,000만원 (100%)</td> <td>2,400만원 (80%)</td> <td>600만원 (20%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기업이 자문을 구하는 '전문가*'에 총 사업비(100%)를 먼저 지급하면, 정부 지원금(80%이하)를 '신청기업'에 지급 * 법무법인, 회계법인, 특허법인, M&amp;A 자문사 등 컨설팅 수행기관 ※ 신청기업이 전문가에게 지급한 총사업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要 ※ 선착순 신청접수, 예산소진시까지</li> </ul>	총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	3,000만원 (100%)	2,400만원 (80%)
총사업비 (공급가액 기준)	정부지원금	민간부담금				
3,000만원 (100%)	2,400만원 (80%)	600만원 (20%)				
사업화 R&D연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KIAT 글로벌기술도입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(X&amp;D)*에 신청할 수 있는 참여자격 부여 *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: 10억 원 이내/년, 최대 3년 이내 ** 해외기술도입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, 2022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</li> </ul>					

## □ 지원절차

- (글로벌기업 발굴·매칭)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 접수후 담당자 미팅통해 기업수요 확인
- (기술도입계약 성사지원) 협상단계 기업에 전문가 비용지원(Max. 24백만원)



- (사업화 R&D 연계지원) 기술도입계약 완료기업에 인증서 발급, R&D참여자격 부여



**2****신청 및 접수**

□ **공고기간** : '24. 3. 6. ~ '24. 12. 31

□ **신청기간**

- (글로벌기업 발굴·매칭) 이메일을 통해 연중 상시접수
- (기술도입계약 성사지원) 연중 상시, 예산 소진시까지
- (사업화 R&D 연계지원) ~'24. 4. 18.(목) 18:00 이메일 도착분까지

□ **신청방법**

- (접수 이메일) tech@kitia.or.kr
- (문의처) KITIA 글로벌공급망실 공급망협력팀
  - 변재효 과장(☎ 02-6000-7961 / ✉ hyo@kitia.or.kr)
  - 김형준 연구원(☎ 02-6000-7941 / ✉ khj93@kitia.or.kr)

□ **제출서류**

제출서류	제출방식
① 글로벌기술도입 지원 신청서 ②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④ 비밀유지협약서 ⑤ 글로벌기술도입 서약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법인등기부등본 ⑧ 3개년도 재무제표 or 감사보고서 ⑨ 중소 or 중견기업 확인서 ⑩ 기업소개자료(IR자료 등, 별도양식 없음)	사업 담당자와 미팅 후, 이메일 신청

**3****선정심의 기준**

심의항목	세부항목
추진역량 및 지원타당성 (30)	추진역량(15), 지원타당성(15)
투자목표 및 추진계획 (20)	투자목적 및 금액(10), 추진경과 및 계획(10)
실행기관 역량 (30)	실행기관 실적(15), 업무내용(15)
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(20)	기대효과(10), 파급효과(10)

□ 사업참여기업이 해외기술도입의 일환으로 체결한 계약이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 만족 시 기술개발과제 신청자격 부여(인증서 발급)

\*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회에 한해 재발급이 가능하며, KITIA 신청서 재접수를 통해 발급을 진행함. 인증기준은 당해연도 변경된 기준에 따라 진행함. 인증서는 발급 직후 도래하는 기술개발과제에 접수하며 효력을 다함.

①-1 해외기업의 지분을 50% 초과(혹은 30%를 초과하며 최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)하여 취득하는 계약\*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

\* 계약서상 계약금에 대한 납입으로 인증기준을 만족함

①-2 해외기업과 영업양수 혹은 특허권을 포함한 자산일체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

※ 단, ①항의 해당하는 계약에 한해, 계약서상 주체와 동일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인증서 발급대상을 달리할 수 있음.

② ①총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의 1/10 이상(동시에 지분율 5% 이상)의 금액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의 지분, 혹은 ②지분율에 상관없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해외기업의 지분을 취득하는 계약\*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한 경우

\* 지분인수 계약서상 기술도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③ 해외기업이 보유한 특허권 양수 또는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해야 함

④ 해외기업과 상호출자하여 국내에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,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①해외기업의 출자금이 정부출연금 신청액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, ②해외기업의 합작투자법인 자본금 납입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때\*

\* 계약서상 기술도입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

## 기술도입계약 체결 시 금기사항

### 기술도입 계약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- ① 사업참여기업 혹은 소속된 임직원이 주요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인 해외기업과의 인수계약 또는 투자계약
-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종료일(잔금지급일)까지 1년을 경과하지 않는 인수계약(단, 계약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)
- ③ 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 금지기간(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) 이내에 상환 또는 회수를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
- ④ 기타 정부 기술개발사업의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

#### \*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정의

- 상법 제542조8의 6호(주요주주) :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·집행임원·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
-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(특수관계인) : 배우자(사실혼 포함)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, 30% 이상의 출자 혹은 그 밖에 이사·감사의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

#### \* 협약해약 사유

투자금 상환 또는 회수 금지기간(투자계약체결일 또는 인수 계약체결일로부터 42개월이 되는 날 또는 신청과제의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) 이내에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- ①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는 행위
- ② 인수한 해외기업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인증대상이 양수를 통하여 승계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